



일본 치매환자 자산규모와 신탁제도 개선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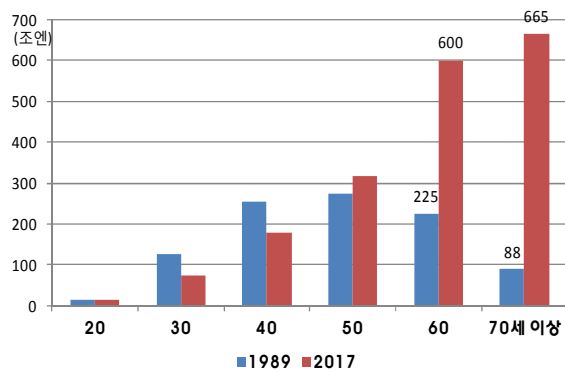
이상우 수석연구원

일본은 가계금융자산의 대부분을 고령자가 보유하고,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30년 치매환자¹⁰⁾가 보유하게 될 금융자산 총규모가 200조 엔을 상회할 전망이다.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 보호를 위한 고령자 사회대책 로드맵을 제정하고 치매환자의 간병비 지출 등 금융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후견인지원신탁제도 개선과 치매환자 전용 예금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등 고령자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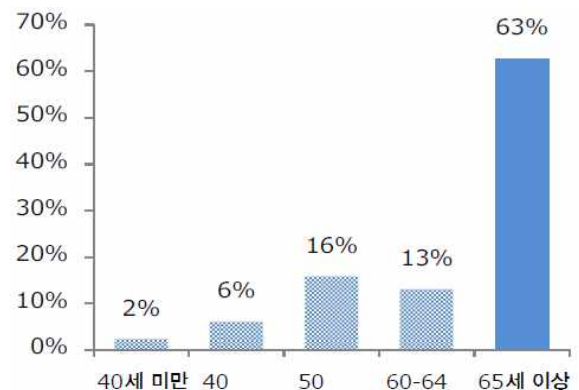
■ 최근 일본은 70세 이상 인구가 2018년 총인구에서 20.7%를 차지하고 2040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5.3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가계금융자산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

- 일본은행 등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가계금융자산이 <그림 1>과 같이 1989년 133조 엔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말 1,265조 엔으로 증가하여 고령자 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전체 가계금융자산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32%에서 2017년 68%를 차지함에 따라 가계금융자산의 고령자 보유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음

<그림 1> 일본 가구주 연령별 가계금융자산 보유 규모



<그림 2> 일본 연령별 유가증권 보유 비중



자료: 1) 日本銀行(2017), 資金循環統計; 財務省(2015), 相続税・贈与税 説明資料를 참고로 작성
2) 大和総研(2018), 高齢社会における金融とその対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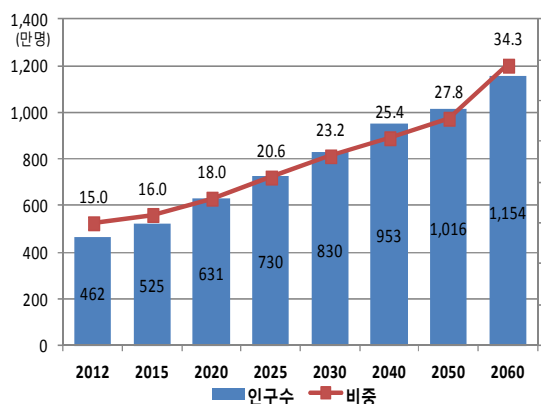
10) 인지증 고령자를 편의상 치매환자로 호칭함

- 고령자가 보유하는 국공채, 사채, 주식 등 유가증권 보유 비중도 전체 인구에서 63%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(〈그림 2〉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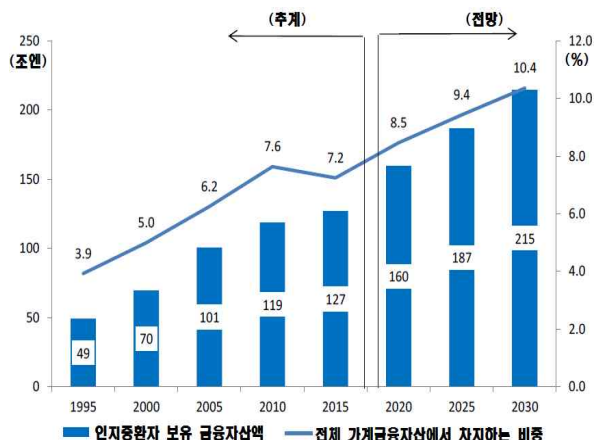
- 일본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인지증 고령자 수는 〈그림 3〉과 같이 2015년 525만 명에서 단카이세대(베이비부머)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 730만 명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 20.6%를 차지할 전망이다

- 경증인지장애(MCI) 유병자 584만 명(2025년)을 포함할 경우 인지증 고령자 수는 총 1,314만 명, 65세 이상 인구(3,544만 명) 중에서 37.0%를 차지하여 2025년이 되면 일본이 인지증사회가 될 전망이다

〈그림 3〉 일본 인지증 고령자 수 전망



〈그림 4〉 일본 인지증 고령자 보유 금융자산 전망



자료: 1) 内閣府(2017), 高齢社会白書
2) 第一生命経済研究所(2018), 認知症患者の金融資産200兆円の未来

- 인지증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2030년이 되면 이들의 보유 금융자산은 200조 엔을 상회할 전망이다

- 인지증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〈그림 4〉과 같이 1995년 49조 엔(3.9% 비중)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127조 엔, 2020년 160조 엔, 2030년 215조 엔이 되어 가계금융자산에서 10.4%를 차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금융청은 2035년이 되면 전체 유가증권 보유자 수 기준으로 32%, 보유금액 기준으로 약 15%를 인지증 고령자가 보유할 가능성을 지적함

- 이에 금융청은 정부가 제정한 고령사회대책 로드맵(2018. 2)에 기초하여 유사 수신행위, 불법 사금융, 보이스피싱,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¹¹⁾

11) 金融庁(2018. 7. 3), 高齢社会における金融サービスのあり方(中間報告)

- 현재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은 금융노년학(Financial Gerontology)에 기초한 고령 투자자 보호, 고령자 눈높이에 부합한 판매·권유·설명제도 개선, 신탁제도를 활용한 재산관리이며, 2018년 12월까지 제도 개선을 확정할 계획임
- 이 중에서 금융청은 인지증 고령자 증가에 대비하여 후견인신탁제도 개선과 인지증 고령자 전용 예금관리서비스 모델 도입 등 인지증 환자의 안전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신탁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음
- 후견인신탁제도¹²⁾는 가족 구성원 등에 의한 인지증 고령자의 예금 등의 부적절한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의 요청에 의해 일본 법원이 인정한 금융회사 적격 신탁플랜임
 - 이 제도는 인지증 고령자 신탁재산을 요양병원비 지출 등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생활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가족을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인출계획에 따라 신탁회사 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구조임
 - 후자의 경우 신탁회사가 인지증 고령자를 대신하여 운용자금으로 활용, 자금계정 편입 조정 등에 의해 인지증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조임
 - 현재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동 신탁플랜을 판매하고 있으나 고객 자산가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향후 소액신탁이 가능하고 다양한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
- 인지증 고령자 전용 예금관리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인지증환자 예금을 생활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생활자금에 대한 가족의 자율성을 높인 신탁제도로 금융청이 도입을 검토 중임
 - 생활자금 인출에 대해서는 법원 인출계획서 제출 없이 가족 등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간병비 등 소액의 생활자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높일 계획임
 - 반면, 금액이 큰 운용자금의 경우 인지증환자 본인 또는 타인이 운용자금 계정으로 입금·인출, 해약, 생활자금 계좌로 이체 등의 과정을 법원과 금융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구조임
- 일본은 고령자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라 간병비 등과 운용자금 관리에 필요한 인지증 고령자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향후 인지증 고령자 금융자산 관리 및 서비스 시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
 - 특히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가족이 적거나 없고, 자녀의 부모 돌봄 의식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, 고령자 스스로에 의한 노후생활 의식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 풍조가 인지증 고령자 금융시장 확대를 가속시킬 것임 **kiri**

12)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국, 법무성 민사국, 신탁협회가 공동 연구하여 2012년에 도입한 신탁제도임